
‘25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련 주요 예상 질문 및 답변 [Q&A]

2024. 11.



‘25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관련 Q&A

- ◆ 아래 Q&A는 일반적인 예상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이며,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로봇진흥원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담당자(053-210-9622, 9623, 9624, 9625, 9626, 9627)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신청 관련

Q1-1. 사업 신청은 어떻게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1-1. 사업신청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업관리시스템 과제신청 매뉴얼” 및 “제출서류 가이드북” 참고

Q1-2. 이 사업에서 도입기업, 공급기업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1-2. 도입기업은 국내에 제조공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공급기업을 사전에 발굴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사업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급기업은 로봇 시스템 설치 기술을 보유한 로봇 SI(System Integration)기업으로 도입기업에 직접 로봇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Q1-3.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한 명시적인 자격요건(공급기업 등록 등)이 있나요?

A1-3. 공급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Q1-4. 도입기업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과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A1-4. 도입기업 규모는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제조기업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기업

Q1-5. 기존에 거래하던 공급업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 가능한가요?

A1-5. 네.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가능합니다.

Q1-6. 공급기업 목록이나 자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1-6. 공급기업 관련 정보는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로봇 자동화 협력 플랫폼(www.racp.or.kr)'을 참고 바랍니다.

Q1-7. 민간부담금(현금) 부담은 누가하며, 현금은 언제까지 준비해야하나요?

A1-7. 도입기업에서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선정통보일('25. 4월 예정)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비 계좌로 전액 납입해야 합니다.

Q1-8. 지역 참여 제한이 있는가요?

A1-8. 아니요, 본 사업은 전국 사업이며 지역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Q1-9. 창업기업(신생기업)도 본 사업에 참여가능한가요?

A1-9. 원칙적으로 공고문의 신청자격에 만족하고,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생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Q1-10. 신설 중인 공장에 로봇자동화를 계획 중인데, 도입기업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A1-10.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계획서 제출 시 현재 생산지표(로봇 도입 전 수치)를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11. 공고 마감일 전까지 공장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인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1-11. “공장등록증 미제출 사유서(자유양식)”로 대체하여 제출해 주시고, 사업에 선정되신다면 추후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1-12. 로봇을 설치하려는 공장이 임대공장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12. 필수서류인 공장등록증 대신에 임대계약서로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5년)까지 임대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13. 기존 로봇의 고장으로 인해 신품으로 교환하려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요?

A1-13. 본 사업의 “노후로봇 교체” 유형으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 노후로봇 교체 : 도입기업에서 활용 중인 10년 이상된 노후 로봇을 교체하는 경우이며, 사업신청시 노후로봇 제조일자 명판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Q1-14. 복수 공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14.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복수의 공정(예 : 원자재 투입 + 소재이송 + 포장 등) 구축으로 공정을 구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Q1-15. 도입 및 공급기업이 외국 소재의 기업일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요?

A1-15. 사업장 소재지가 국외일 경우, 필수제출 서류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불가능하여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Q1-16. 도입기업이 외국계 기업이지만 제조현장이 국내에 있는 경우,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

A1-16.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며, 필수제출 서류인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가 제출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1-17. 한 곳의 공급기업이 다수의 도입기업과 함께 사업에 신청해도 되나요?

A1-17. 네. 공급기업은 다수의 도입기업과 각각의 과제로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도입기업은 하나의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만 가능합니다.

Q1-18. 과거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1-18. 네. 신청 가능합니다. 단, 도입기업의 경우 과거 지원받은 공정과 동일하지 않은 공정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1-19. 스마트공장 사업 내 다른사업업과 동시에 신청도 가능한가요?

A1-19. 스마트공장 사업 내 동시 선정/신청 제한이 있으니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시 선정·신청 제한사업 목록('25년 신규 신청인 경우)

사업명	내용
①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지역특화 프로젝트 포함)	①~⑥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⑦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공장 사업 완료 후 신청 (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⑧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①~⑤ 사업 중 하나와 ⑧,⑨ 사업 동시 수행가능 ※ ①~⑤사업에서 FEMS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에만 ⑧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동시수행가능
⑨ 제조혁신자동화* (제조로봇, 제조기반)	

* 제조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및 제조기반(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사업) 간 동시 신청/선정 및 사업수행 가능(단, 동일한 공정에 대한 신청/수행은 불가)

2. 평가 관련 Q&A

Q2-1.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1. 다음과 같은 평가 절차를 통해 최종 과제가 선정됩니다.

- ① 서류심사 ⇨ ② 서면평가(1차 평가) ⇨ ③ 발표평가(2차 평가)
⇨ ④ 현장평가 및 사업비 심의(3차 평가) ⇨ ⑤ 최종 선정

Q2-2. 선정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2. 공고문에서 공지한 내용과 동일하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기준 >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사업목표 및 전략	◦ 사업 목표(KPI) 수립의 적절성
	◦ 인력난 해소, 근로환경 개선 등 로봇 도입의 효과성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로봇자동화시스템 구축 능력	◦ 로봇 자동화 시스템 구현 기술의 난이도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계의 구체성
	◦ 도입기업 공정 분석 및 공급기업 자동화 구축 역량
사업비 산정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타당성

Q2-3. 평가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2-3. 평가위원회는 로봇전문가, 공정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3. 사업비 관련 Q&A

Q3-1. 총 사업비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A3-1. 아니요. 제한이 없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국비 지원금은 최대 2.5억원이며, 반드시 도입기업에서 최소 50% 이상을 매칭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총사업비 규모가 10억원인 경우 국비 신청 규모는 최대 2.5억원이며, 도입기업은 7.5억원을 현금으로 매칭해야 함

Q3-2. 로봇 구매 시 중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2. 불가능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협약 이후 신제품 구매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Q3-3. 본 사업을 통해 MES 등 S/W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S/W 구축 비용도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A3-3. 사업비는 로봇 도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구축하려는 바가 S/W 중심이라면 본 사업보다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추천 드립니다.

Q3-4. 로봇시스템 도입 시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3-4. 지원 가능한 사업비 범위는 로봇 구입비용과 로봇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그리퍼, PLC, 인터페이스 모듈 등) 비용이며, 로봇 자동화 공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해 인정이 됩니다.

사업비 인정 여부는 사업비 심의 단계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 (예시1) 프레스공정의 경우 로봇플랫폼, 그리퍼, PLC, 인터페이스 장치는 지원이 가능하나 기존공정 설비로 판단되는 프레스기와 금형 등은 지원 불가

* (예시2) 컨베이어와 같이 전체 공정에 설치해 공정자동화를 지원하는 설비는 로봇시스템 사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공정 구간에 설치되는 부분만을 인정해 지원

< 사업비 지원 산정기준 및 용도 >

순번	비목	세목	구분	내용											
공통 적용 기준				○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현금 산정 - 공급가액 기준으로 산정(부가세 미포함)											
1	로봇시스템 설치비	설치비	산정기준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로봇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비 (로봇 운반비 등) ○ 총 사업비의 15% 이내											
2	로봇 구축비	로봇 본체	산정기준	○ 수행과제에 투입할 로봇 - 로봇구분 : 다관절로봇, 병렬로봇, 직교로봇, 스카라로봇, 협동로봇, 무인이송로봇 등 과제에 투입되는 제조업용 로봇											
		로봇 핸드	산정기준	○ 투입된 로봇에 부착하는 그리퍼 - 그리퍼 : 공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로봇암에 부착되는 로봇 핸드 장치											
		로봇 액세서리	산정기준	○ 로봇 본체에 부착하여 로봇의 안정적인 구동 및 작업을 지원하는 부가 장치 - 예) 드레스 팩, 센서, 보고대 등											
3	로봇 주변설비 구축비	세부내역	산정기준	○ 로봇 자동화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공정 설비 - 예) 컨베이어, 지그, 팔레트 등 해당 공정 구현을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4	전기장비 구축비	세부내역	산정기준	○ 로봇 및 주변설비의 가동 및 제어를 위해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장비 일체 - 예) PLC, 제어판넬, 전장박스 등											
5	안전설비 구축비	세부내역	산정기준	○ 로봇 시스템 안전 관련 법규를 충족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설비 일체 - 예) 안전펜스, 안전센서, 라이트 커튼 등											
6	감리·정산비	감리 수수료	산정기준	○ 현장감리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 각 과제별 일괄 감리 수수료(1,000천원) 적용											
		정산 수수료		○ 사업비 정산 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지급 - 정산 수수료는 과제별 사업비 총사업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table><tr><th>총사업비</th><th>정산 수수료</th></tr><tr><td>1억 미만</td><td>1,000천원</td></tr><tr><td>1억 이상 ~ 3억 미만</td><td>1,200천원</td></tr><tr><td>3억 이상 ~ 5억 미만</td><td>1,400천원</td></tr><tr><td>5억 이상 ~ 10억 미만</td><td>1,600천원</td></tr><tr><td>10억 이상 ~ 30억 미만</td><td>1,800천원</td></tr><tr><td>30억 이상</td><td>2,000천원</td></tr></table>	총사업비	정산 수수료	1억 미만	1,000천원	1억 이상 ~ 3억 미만	1,200천원	3억 이상 ~ 5억 미만	1,400천원	5억 이상 ~ 10억 미만	1,600천원	10억 이상 ~ 30억 미만
총사업비	정산 수수료														
1억 미만	1,000천원														
1억 이상 ~ 3억 미만	1,200천원														
3억 이상 ~ 5억 미만	1,400천원														
5억 이상 ~ 10억 미만	1,600천원														
10억 이상 ~ 30억 미만	1,800천원														
30억 이상	2,000천원														

Q3-5. 만약, 과제에 선정이 되었을 시 국비지원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A3-5. 협약 체결 시(25. 4월 예정)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사업비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검토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협약 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뒤 제출해야 합니다.(보증기간은 협약기간 +3개월로 설정)

* 도입기업의 사업비계좌에 민간부담금 전액 납입 확인 후, 동 계좌로 국비지원금 지급

Q3-6. 사업수행 중 발생한 부가세는 집행이 가능한가요?

A3-6. 아니요, 부가세는 사업비 통장이 아닌 별도의 통장을 통해 지출해야 합니다. 사업비 통장에서는 반드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사용해야 합니다.

Q3-7.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 가능한가요?

A3-7. 아니요, 과제 수행 중 발생한 이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발생한 이자는 진흥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 국고 환수처리 해야 합니다.

Q3-8.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3-8.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Q3-9. 회계 정산 수수료를 사업비에서 지급하나요?

A3-9. 네. 과제 신청 시 정산수수료는 총 사업비 규모에 맞춰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사전에 편성해 사용합니다.

Q3-10. 과제 선정 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3-10. 불가능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과제 선정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기타 Q&A

Q4-1. 로봇 설치 후 유지보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4-1. 공급기업은 도입기업에 로봇 설치 후 최소 1년 이상의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로봇 공급 계약서상 최소 1년 이상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미포함시 협약 체결 불가)

Q4-2. 과제를 통해 설치되는 로봇자동화시스템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4-2. 사업 결과물은 도입기업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설치된 로봇자동화시스템은 성과활용기간(5년)동안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며, 중도 처분(변경, 이전 포함)할 수 없습니다.

Q4-3. 제출서류 중 로봇자동화 시스템 비교견적서는 반드시 3부를 제출해야 하나요?

A4-3. 네. 컨소시엄을 구성한 공급기업의 견적서 1부와 타 공급기업의 비교견적서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Q4-4. 하반기에 추가 모집도 진행하나요?

A4-4. 아닙니다. 저희 지원사업은 매년 초 사업 공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한 번에 지원과제를 선정하고, 추가모집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Q4-5. 업종코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4-5. 업종코드는 공장등록증 상 공장의업종(분류번호)으로 기재된 5자리 코드를 대표로 1개만 작성하면 됩니다.